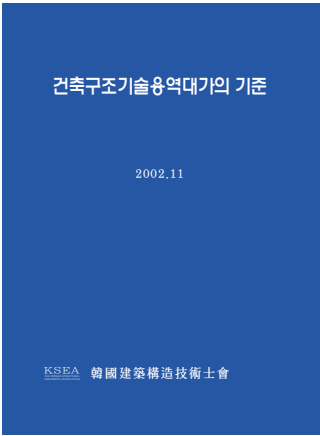


# ‘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의 기준’을 작성하며



## 1 들어가며

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금년 2002년 6월 5일자로 공고되면서 1994년에 제정되어 1995년 10월 1차 개정을 한 후 IMF 한파 등의 이유로 손대지 못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기술용역대가기준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 금번에 작성된 대가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 실효성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잣대의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 여기에 대가기준의 작성된 배경을 여러 회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영업활동 및 영업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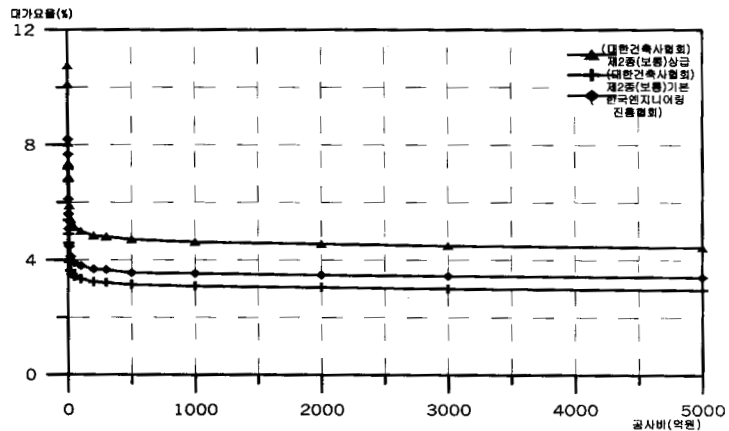
## 2 건축구조기술 용역대가 작성의 방침

### 1)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체화된 업무영역 명시

기존 “구조설계 최소대가기준”을 “기술용역대가기준”으로 바꾸며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를 설계분야 외에 모든 구조관련분야를 망라시키는 것으로 하였다.

### 2) 건축구조기술 용역대가 산출의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과 동일

설계용역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‘실비정액가산방식’으로 하되 예정공사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다.



대한건축사협회 제정 건축사 건축설계대가요율(공사비 대비 건축설계대가요율)의 뿌리가 앞서 언급한 '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' 과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.(도표 참조)

엔지니어링 사업대가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정 건축설계대가요율과 비교할 때 제 2종(보통)건물의 증급정도 도서작성수준일 경우로 보면 될것이다.

또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의 기본설계, 실시설계의 의미는 건축사 업무기준의 계획설계, 중간설계, 실시설계의 내용과 다소 다르나 전체 설계분야 용역대가의 합은 동일하다고 보았다.

### 3) 가중치의 적용 및 기본소요인력 산출

복잡한 건물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두도록 하며 건축구조설계 최소대가기준은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 소요인력 산출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.

### 4) 설계용역대가는 총 설계비 산출로 함

구조계획서(10%), 구조계산서(40%), 구조도면(30%), 검토 및 날인(20%)을 합한 총설계비를 산출하여 필요시 마이너스 옵션으로 처리토록 함.

### 5) 엔지니어링임금 실태조사 내용을 노임단가로 함.

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에 공표되는 건설부분 기술자 노임단가를 대가산출에 적용토록 하였음. 따라서 용역대가가 변화하는 임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하였다.

### 6) 우리회 표준양식 첨부

부록에는 '구조설계 표준계약서' 등 우리회에서 제안하는 양식을 첨부토록 하였다.

## 3. 맺으며

용역대가기준을 작성한 후 우리회 홈페이지 공람 및 이사회 등을 거쳐 이제 공표하는 시점에 와 있으나 아직도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어 계속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다. 또한 앞으로 이 잣대를 우리 모두가 잘 이용하도록 윤리강령의 제정도 필요하리라 본다.

끝으로 본 용역대가기준 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 일해준 도화구조 안중신 소장, 공간구조의 김근영 소장과 보성구조 김영민 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. **KSEA**